성주군하수도 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년 9월 7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 가. 제안일자 : 2005년 8월 26일
 나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 다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1일
 라. 상정일자 : 제127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조례심사 특별위원회
 - 제1차 위원회 (2005년 9월 2일) 상정
 - 제2차 위원회 (2005년 9월 7일)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보호과장 : 송용섭)
 가. 제안이유
 ○ 우리군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, 원인자부담금, 배수설비 인, 허가 등 하수도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 나. 주요내용
 ○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(안 제2장)
 · 배수설비의 구조
 · 배수설비의 설치신청
 ○ 공공하수도사용(안 제3장)
 ○ 사용료(안 제4장)
 ·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
 ·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
 · 원인자부담금
 ○ 보칙
 · 사용의 제한
 · 과태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일수)

○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성주군하수도 사용조례안은 우리군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, 원인자 부담금, 배수설비 인·허가 등 하수도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선 인근 지역과 형평성등을 감안, 업종별, 사용량별로 세분화된 하수도 사용 요율표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등이 적정 하다고 사료되며

○ 앞으로, 정액제인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여러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분석, 적기 조정등 본 조례안에 대한 지속적 보완 및 사후관리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특이사항 없음)

5. 토 론 요 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첨부 : 성주군하수도사용 조례(안) 사본 1 부.